

#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최 일시 : 2016. 6. 27(월) 10 : 00 ~ 17 : 20

개최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주요내용

### 1.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참석위원 : 5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참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 ◆ 수정내용

○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구성) ① 범시민네트워크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각종 기관·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범시민네트워크에는 공동대표, 고문단, 전략기획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범시민네트워크에는 5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되,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

2. 기관·단체 대표 등 시민의 존경을 받고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④ 고문단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에 관한 전략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두며 인문, 역사, 문화, 관광, 사회, 체육, 시민사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안 제10조제1항‘범시민네트워크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하며

○ 안 제12조는 삭제하고

○ 안 제13조 내지 제18조를 안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하되, 안 제13조 제1항을‘항 없는 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며

○ 안 제14조제3항을 삭제

## □ 질의 및 답변

### < 차준택 위원>

- 범시민네트워크의 정의와 구성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제 비용과 차이가 나는데 설명이 필요함  
→ 비용추계에 오류가 있었음

### < 이영훈 위원>

- 센터운영의 위탁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위탁한다고 보는데 제15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 위탁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 가치재창조 관련 섹프로젝트 등 큰 사업인데 센터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업무를 넘어선다고 보임
- 범시민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음.

### < 신영은 위원>

- 가치재창조를 위한 것은 연구 중심이 되어 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에 있는 인건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까 염려됨.  
→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용을 추계함.

### < 유일용 위원>

- 제2조 정의에서 범시민네트워크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이 추상적이다.
- 제8조 구성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2.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참석위원 : 4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참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민원실장

### ◆ 수정내용

- 안 제12조제4항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

### □ 질의 및 답변

< 유일용 위원 >

- 보궐위원의 임기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유. 보궐위원 임기조항을 삭제하면 문제가 없는지  
→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음.

< 허준 위원 >

- 제12조제4항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보면 용어가 너무 어렵다. 쉬운 문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3.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 참석위원 : 6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참석공무원 : 재난안전본부장

### □ 집행부 의견

- 법률 제30조제3항은 2015년 7월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조 참여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참여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이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또한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주관기관이 국민안전처로 국가사무에 해당되며, 일정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질의 및 답변

### < 유일용 위원 >

- 조례의 필요성은?

→ 김경선 의원> 해양경비안전서에 배정된 예산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니, 조례로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함.

- 제주도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 조례의 입법형식이 김경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입법형식이 다르며, 어업에 관한 업무를 자치사무로 보아서 조례를 만든 것임.

- 민간인이 수난구조에 참여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 < 이영훈 위원 >

- 그동안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이 경비를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국가에서 세운 예산이 부족시 지자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국가에서 세운 예산이 부족시 지자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 김경선 의원> 법률에 ‘지자체에서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니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 차준택 위원 >

- 심의의 요점은 수난구호에 대한 경비지원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봄.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필요시 예산을 지자체에 요청해도 무방하다고 봄.

4.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6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참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질의 및 답변

< 허준 위원 >

- 제3조제2항제5호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삭제하는 사유는?

< 유일용 위원 >

- 계약심의회 심의대상은?

- 제3조제2항제3호중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시민단체는 어디를 말하는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중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조항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본조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한 사항으로, 해당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조항에서 해당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몇 명인지?

- 2016년도 계약심의회 개최실적은?

< 차준택 위원 >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이와는 따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 5. 인천광역시 군·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참석위원 : 5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 참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 집행부 의견 <기획조정실장>

→ 입법취지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별도 조례 제정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현재 유사중복조례 통합 작업 중이므로 재정 관련 조례 정리 시기에 맞춰 함께 논의했으면 함

### ◆ 수정내용

- 제2조 제1호를  
“ ‘지역사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사업 중 국·시비가 1억원 이상 보조되는 군·구 사업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군·구 현안사업을 말한다. ” 로 수정하고
- 제3조 중 “인천광역시회의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회의의장”으로 하고,
- 제6조 제2항 중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를 “통보받은 자료를 ”로 수정

### □ 주요질의 및 답변

#### < 허준위원 >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 제2조 현안사업의 한계가 없음. 집행부 실무자와 의원간 의견이 다를수 있음
- 기준은?  
→ 예산사업의 한계를 두는게 낫다. 매달 통보는 적절치 않음  
사업 변동이 없는데 매달 통보함은 의미가 없음]

#### < 이영훈위원 >

- 예산이 확정됐다가 실질적으로 안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지출 시점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군구사업으로 월별 보고하는  
게 낫지 않은가?

< 유일용위원 >

- 예산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자금이 교환되는 경우도 있음  
사업은 폭넓은 개념... 다른 예산도 포함... 의원은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자끼리 논의되는 주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함임

< 이영훈위원 >

- 인천시 직영사업의 경우? 현안사업인가?  
→ 군구 사업이 아님. 다툼이 많을 수 있음
-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 유일용위원 >

- 현안사업은 법률적 용어임. 실무자가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이영훈 위원 >

- 중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논의 필요.  
→ 공감함. 명확할 필요있음.

< 차준택위원 >

- 2조는 명확하게 할 필요 있고 6조는 검토 단계는 필요 무.
- 7조는 불필요. 3조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하 부분 삭제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4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 이용범)
- 참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주요질의 및 답변

< 유일용위원 >

- 투자유치 전략본부와 경제산업국 두 개국만 담당하는 사유?  
→ 정무기능강화에 따른 업무량과 업무 관련성 고려함.
- 정무적 기능위해서 건설 , 재정분야가 넘어 오는게 낫다  
→ 전문성 강화 필요, 기술직 분야가 많아 행정부시장 소관이 나옴.

< 이용범위원 >

- 정무부시장 → 경제부시장→정부경제부시장 명칭변경이 공무원과

의회 등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음

→ 재정을 포함한 현안을 처음으로 경제부시장으로 운영했는데 재정현안이 상당부분 해결이 되어 정무기능 회복이 필요하므로 변경하고자 함

○ 경제부시장→정부경제부시장 명칭변경이 좋은 점은?

→ 의회 소통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임

○ 시대변화에 맞춰서 명칭 변경은 가능하나 신중할 필요있음

###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4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 이용범)

○ 참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 □ 주요질의 및 답변

##### < 유일용 위원 >

○ 소방경, 소방위 기준변경? 인건비만 증가되는 것 아닌가?

→ 총액인건비 2015년 추가로 내려옴. 교부세 산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음

##### <이용범 위원 >

○ 소방경 6%→ 7% 증가하면 몇명 증가하나?

→ 40명임. 현재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가능함

○ 정확한 비용추계는 ? 예산증액 되나?

→ 호봉수 등 고려 정확한 집계는 어려움.

##### <차준택 위원 >

○ 119센터 몇 개?

→ 67개임. 67개중 27개 조정됨.

7.1 (금)

4

1.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보고자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 동 항